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	2018.11.29.(목) 조간	배포	

책 임 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하 주 식(02-2100-2960)	담 당 자	권 기 순 사무관 (02-2100-2963)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 오 흥 주(02-3145-8220)		박 동 원 보험상품공시팀장 (02-3145-8246)
	신용정보원 상무 박 광 춘(02-3705-5808)		신 원 섭 보험정보부장 (02-3705-5851)
	생명보험협회 시장관리본부장 신 영 선(02-2262-6569)		김 인 호 리스크관리지원부장 (02-2262-6603)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본부장 이 재 구(02-3702-8524)		최 윤 석 일반장기보험부장 (02-3702-8531)

제 목 :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 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①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동일한 보장의 개인실손으로 전환
 -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 10대 질병* 이력 없음 ⇒ 無심사
-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 보균)

②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실손 종료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

-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시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가능
 - 단체실손 종료시 無심사*로 재개시점에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
- * 보장종목,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

- **(추진배경)** 실손보험은 개인실손, 단체실손 등이 출시되어 있으나 상품간 연계제도가 부재
 - 이에 따라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
 -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
- **(진행경과)** 정부는 소비자가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방안'을 발표('18.3월)
 - 금융위, 금감원, 신용정보원, 생·손보험회 및 보험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연계제도 세부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4~11월)
 - '18.12월부터 실손보험 연계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18.11월 완료)

【참고 : 실손보험의 구분】

- ① **개인실손** : 건강한 0~60세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
- ② **단체실손** :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
- ③ **노후실손** :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 ④ **유병력자실손** : 가입심사가 완화되어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으로 실손가입의 문호가 확대된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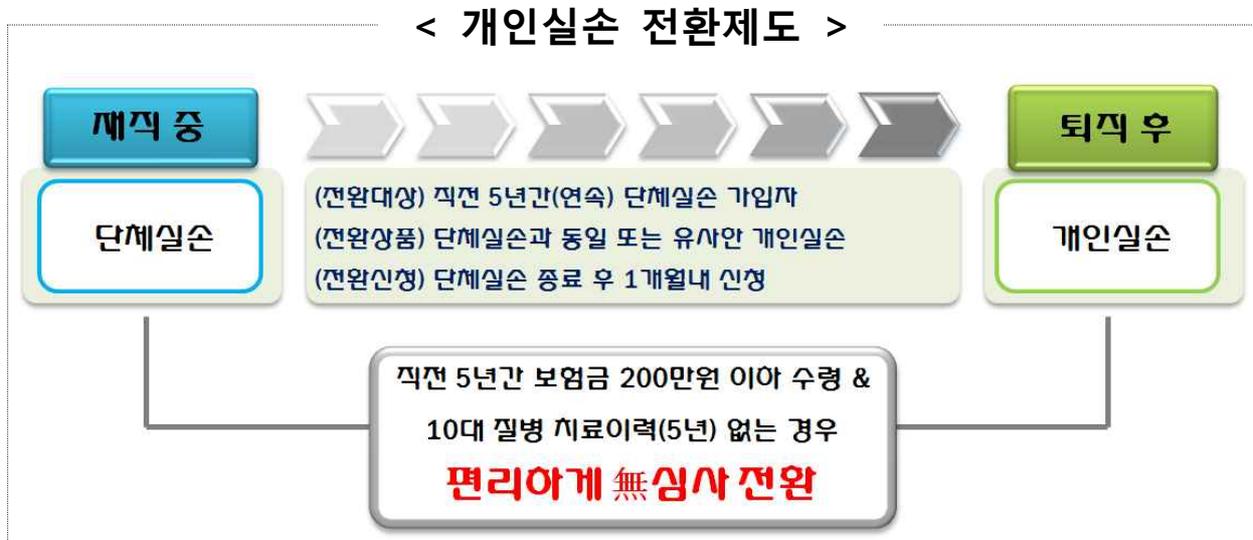
II 실손보험 연계제도 주요내용

1. 퇴직시,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 → 개인실손 전환

□ (개요) 단체실손에 5년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

○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無심사 전환

* 단체실손에서 수령한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금액 포함



□ (전환대상)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 임·직원 중 개인실손 가입연령에 해당하는 자

○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

* 해외지사 파견 및 해외발령 등으로 단체실손 가입기간이 단절된 경우 해당기간은 단체실손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관련 증빙서류 필요)

○ 통상적인 직장인의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소 65세까지는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환연령 확대(기존 방안은 60세)

□ **(전환신청)**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 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을 신청*

* 개인실손 전환 후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철회 가능

- 퇴직 직전에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자는 퇴직 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
- 여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을 나누어 인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중 원하는 보험회사*로 전환을 신청

* 전환신청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에서 가입된 보장종목을 그대로 전환

□ **(전환심사)**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 무심사 전환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합산하여 적용

-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개인실손에 가입
- 소비자는 무심사 요건*에 대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 등이 제한

* 무심사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치료이력 등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무심사 전환

□ **(전환상품)**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고,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가입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

* 보험회사가 단체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인수심사 없이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전환

- 소비자가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 결정

【전환상품 예시】 직전 5년간 단체실손 가입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해입원·통원	상해입원·통원	상해입원·통원 질병입원·통원	상해입원·통원 질병입원·통원 비급여특약(3종)	상해입원·통원 질병입원·통원

⇒ '19년 전환신청시 직전('18년) 보장종목인 상해입원·통원, 질병입원·통원을 보장하는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

♣ '14.10.16 이후 단체·개인실손 중복 해소를 위한 단체실손 보장 변경 제도*(실손형 → 정액형 보장)에 따라 정액형을 선택한 단체보험 가입자도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 → 전환제도의 실효성 극대화

* 보험회사가 단체보험을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이원화하여, 개인실손에 이미 가입한 단체보험 가입자는 '실손형'과 '정액형' 중 선택 가입 가능

□ (대상) 개인실손 가입자가 '14.10.16. 이후 단체보험을 실손형이 아닌 정액형으로 선택하여 가입(전환) 후,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을 해지한 경우

□ (적용) 단체실손 보장 변경제도 시행에 따라 단체보험을 정액형으로 가입한 기간도 단체실손 가입기간으로 인정

○ 다만, 전환 직전에는 실손형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무심사 판단시 실손형과 정액형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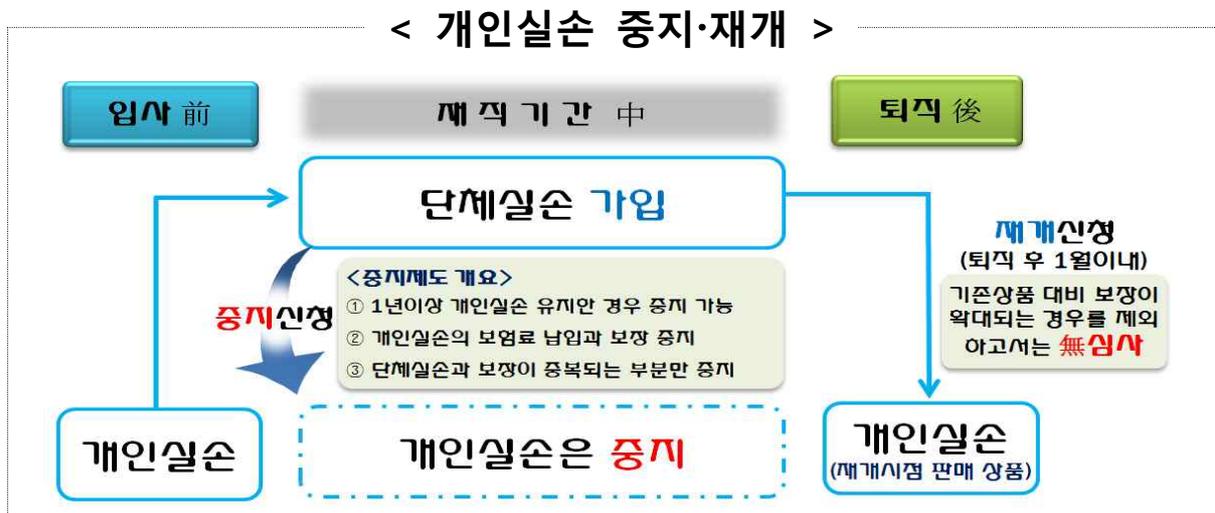
* 정액형 가입자가 '18.12.1.부터 보장기간 종료일 사이에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정액형에서 실손형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환 직전 상품이 정액형이더라도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

**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지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며, 보험금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 소비자는 정액형 가입내역, 보험금 수령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

2.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 개인실손 중지 후, 필요시 재개

- (개 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
- 향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既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하여 실손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



개인실손 중지

- (대상)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자
- (운영) 단체 및 개인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만 중지 가능
-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 가능*
- * (예시) 개인 종합(상해+질병)입원+단체 상해입원 → 개인 종합입원 전체 중지
- 소비자는 개인실손 중지관련 확인서를 수령 후 15일 이내 개인실손 중지 철회 가능

개인실손 재개

□ **(운영)** 퇴직 등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의 재개를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 → “無심사” 재개

* 소비자가 無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에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기한을 설정

○ 이직으로 인한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

○ 다만, 단체·개인실손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음

○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을 중지한 경우, 가입자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같이 해지되므로 재개 곤란

□ **(재개상품)**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보장이 재개

* 보험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하는 경우 판매중지 직전의 개인실손 상품을 보유하며 해당 보유상품으로 재개

○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재개하되 보장종목, 부담보 등 세부조건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

* 보험회사는 개인실손 재개를 위해 중지 전 개인실손의 계약정보를 보유

○ 소비자가 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가 결정

Ⅲ 소비자 안내 강화 방안

- 보험회사가 단체보험 계약자에게 실손 연계제도 관련 설명 자료를 제공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단체보험 계약 체결시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

Ⅳ 실손보험 연계 신청방법

-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회사(14개 손보사, 17개 생보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신청 가능
-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 등 연계제도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
 - * ① “단체 → 개인실손 전환” :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 ②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 개인실손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 단체·개인실손간 연계제도의 경우에는 보장종목 중지, 변경 등 보장범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연계제도 관련 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면채널 위주로 운영

Ⅴ 향후 계획

- '18.12월*부터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 시행
 - * 12.1.이 토요일인 관계로 실손 연계제도 신청은 12.3.(월)부터 가능
- 착한실손('17.4월 이후) 이전에 가입한 실손계약자가 착한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
 - * 현재에도 착한실손으로 전환 가능하나, 만기 연장(80세 → 100세) 등 보장 범위 확대 시에는 전환이 곤란

(1) 단체 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 개인실손은 개인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단체실손은 단체실손 가입자의 위험률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따라서,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일지라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려면 직전 5년간 계속 동일한 보험회사의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5년간 연속적으로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동일한 보험회사일 필요는 없으므로 단체실손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매년 변경되어도 5년간 연속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3) 단체보험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시 무심사 조건에 관련된 사항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 단체보험 가입시에는 개인에 대한 별도의 인수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어 심사를 거친 다른 개인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심사는 불가피합니다.
- 따라서 전환 신청자는 보험회사에 무심사 조건*에 대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전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여부 &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보균] 치료 이력

(4) 단체보험을 정액형으로 가입한 임·직원도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개인실손 가입자가 '14.10.16. 이후 단체보험을 실손형이 아닌 정액형으로 선택하고 개인실손을 해지한 경우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전환신청 직전에는 정액형이 아닌 실손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18.12.1.부터 단체보험 보장기간 종료일 사이에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환 직전에 정액형이더라도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 제도시행 이후부터 단체보험 보장기간 종료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정액형을 실손형으로 선택할 수 없는 측면을 고려
- 소비자는 단체보험 정액형 가입내역, 보험금 수령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실손 중지제도에서 개인실손을 1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중지하도록 정한 이유가 있나요?

- 개인실손은 가입시 인수심사를 거치지만 단체실손의 경우 개인에 대한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해당 단체의 직무내용 등을 심사합니다.
- 이를 이용하여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개인실손 가입이 곤란한 계약자가 취업(단체실손 가입)을 앞두고,
- 알릴의무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고 개인실손 가입 후 중지하는 등의 도덕적해이를 예방하고자 일정 유지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6)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무조건 개인실손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 개인실손을 중지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이 개인실손에 비해 낮은* 경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단체 실손의 가입금액(1,000만원, 3,000만원)이 개인 실손(대부분 5,000만원) 보다 적을 수 있고, 질병과 상해 중 한 개의 담보에만 가입된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단체실손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실손을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7) 여러차례 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 중지와 재개를 반복할 수 있나요?

□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에는 단체실손 가입기간 중 언제든지 개인실손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와 재개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이직 등의 과정에서 단체·개인실손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의 인수 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無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에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

(8) 회사(단체실손 계약자)가 더 이상 단체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중지했던 개인실손 재개가 가능한가요?

□ 회사가 단체실손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거나,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이 변경(상해입원 → 질병통원 등)되는 경우에도 재개가 가능합니다.